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

발 의 자 :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건의료인과 환자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 갈등 해결과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건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책임공제

라 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종합공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 등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함을 명시함 (안 제3조).

라. 이 법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처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환자의 피해 보장을 확보하고 종합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받지 못함을 명시함 (안 제4조)

법률 제 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의료기관개설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6.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를 말한다.
7. "책임공제"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8. "종합공제"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처벌의 특례)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단,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제외
2.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3.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제3조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제5조(의료배상책임공제에의 가입의무) 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인 개설자 명의로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과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제조합 등의 책임공제 계약체결의무) ① 공제조합은 제4조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공제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폐업신고서가 수리되어 의료업 등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2. 당해 보건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조 (종합공제 등에의 가입 및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제4조에 따라 책임공제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공제에 가입된 보건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공제약관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공제조합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8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종합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과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종합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부터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